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51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송재봉 · 김문수 · 한준호
이용선 · 김남희 · 이광희
박홍배 · 최혁진 · 이연희
박정현 · 박 정 · 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

·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8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의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u> <u>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u> <u>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u> <u>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u> <u>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u> <u>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u> <u>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u>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u> <u>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u> <u>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p> <p><u>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u> <u>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u> <u>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u> <u>계획의 개요 및 규모</u> <u>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u> <u>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u> <u>과</u> <u>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u> <u>계획의 성과목표</u> <p><u>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u> <u>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u> <u>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p>

<신 설>

정한다.

제8조의5(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
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
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
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
행실적

3.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